

건축사보수기준 개정, 이렇게 생각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건축사

Architect's Social Responsibility

李永熙/(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by Lee, Young-Hee

우여곡절을 거쳐 건축사업부 보수기준이 1993년도 마지막하루를 남기고 개정, 공포되었다. 만사지탄의 감을 면치못하지만 이번 개정이 건축, 건설 산업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하겠다.

건축사 보수기준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건축사협회가 제정,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포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본협회는 6년전부터 보수기준 개정작업을 간헐적으로 연구검토하여 당국에 건의하여 왔으나, 물가정책의 큰산맥에 막혀 한발자욱도 진전하지 못하였다. 보수기준의 현실화는 92년도 회장선출시 본인의 주요 공약중의 하나였으며, 취임후 서둘러(1993.1.27)건축학회의 용역 결과를 근간으로 하여 정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당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시각도 긍정적으로 성숙되었기 때문에, 93년 5월까지 승인을 득하여 94년 정부 예산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이 추진계획의 목표였다.

우리 분야와 유사한 과학기술처 관장하에 있는 토목설계 등 엔지니어링 사업 용역 대가기준은 1975년에는 건축사보수기준에 비하여 60% 수준이었으나 1993년도의 기준은 역으로 1.8배로 현실화 되었다. 엔지니어링 용역대가 기준은 1988년도에 이미 2배로 상향조정되었음을 상기할 때, 1975년 이후 18년동안 대한건축사협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자조적인 질문만 남는다.

바야흐로 무한경쟁시대,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 제고야말로 국가경영의 지상목표일 것이다. 국가경쟁력은 산업의 경쟁력에 기초를 두고, 산업의 경쟁력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서부터 출발한다. 건축, 건설, 산업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그 「소프트웨어」인 설계, 기획분야가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

건축설계분야가 세계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급 두뇌집단이 건축의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지속적인 기술축적을 바탕으로 좋은 건축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좋은 건축의 정의는 무엇인가? 건축은 다양한 그 시대 인간의 생활을 담은 그릇으로서, 그 기능면에서 최대 생산치에 접근하여야 하며, 장소성, 사회성, 역사성 등이 총화를 이룬 공간배분과 창의적인 조형미가 부각되어야 하며, 내구적이고 경제성이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좋은 건축은 건축사 한사람의 스케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관련된 많은 분야의 전문가 집단의 장인적인 협력으로 생산되는 것이다.

개정전의 건축사보수기준 하에서 우리의 설계환경은 어떠하였는가, 25년간 한우물을 파온 체험으로 비취볼 때,

한마디로 요약해서 계속 바빠야 겨우 먹고 산다는 말이 적절할 지 모르겠다.

일정량을 채워야하기 때문에 질을 추구하기에는 너무나 각박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건축설계사무소가 고급인력을 조직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기술축적이란 요원하며, 경쟁력 약화는 명약관화가 아니겠는가.

이번 보수기준 개정에 즈음하여 상승비율이 왜곡되게 인식됨으로 해서 일부 소규모 주택건설자들을 중심으로 탄원과 항의가 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종전보다 3배가 올랐다고 야단들이었다. 여기에 일부 우리 회원인 건축사들도 다 받지도 못할 것인데, 세무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들려온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개정내용에서, 상승률은 정확히 말해서 평균 76%선이며, 용역대가만 상향된 것이 아니다. 건축사업부 내용과 책임이 보다 확대강화 되었음을 분명히 인지하여야 한다. 2배보다 3배다 하는 뜻은 제대로 받지 못한 종전요율을 기준한 지엽적인 수치일 것이다. 차제에 우리협회 내부의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협회 창립 이래 각종 회비를 각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적회비 산출기준표를 해마다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다. 이 실적회비 산출기준이 건축사업부 보수기준으로 둔갑하여 지역 건축사회에서는 관행으로 적용하여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 실적회비 산출기준표는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하며, 필요한 협회운영비는 단위 면적당 징수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세무관계는 실 매출액이 근거가 됨이 분명한데도, 우리 내부의 모순된 실적회비 산출기준표 운영관계로 협회는 회원에게 20여년간 세무부담만 가중시켜 왔음을 반성해야 한다.

개혁과 변화의 시대에 우리 건축사도 동참하자는 결의와 구호는 요란하였지만, 진정 우리 내재적인 준비는 되어 있는가? 다같이 자기 성찰을 해야할 시기가 아닌가 한다.

면허에만 의존하여 지역적 울타리만을 강화함으로써 집단이기를 극대화 하겠다는 단순 논리가 더이상 만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건축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선행될 때 공정한 경쟁은 성숙될 것이며, 우리 건축사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